

## 목적

민원신고양식(Civilian Report Form)은 주로 East Bay Regional Park District 경찰서 직원의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양식은 직원에 대한 칭찬 또는 잠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 관련해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경찰 조사가 필요한 활동 또는 상황을 신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ast Bay Regional Park District 공공치안본부

17930 Lake Chabot Road  
Castro Valley, CA 94546

**긴급 상황:** 휴대폰에서 911 또는 510-881-1121로  
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업무 또는 비긴급 상황:**  
510-881-1833,  
24시간 통화 가능

**TTY/TDD:** 510-881-1352



## 결과

본 양식을 작성하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경찰서는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민원인의 의견 및 불만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832.7)

공정한 조사와 검토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내부 규율 시스템을 통해 청렴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East Bay   
Regional Park District

건강한 공원 건강한 시민

2950 Peralta Oaks Court  
Oakland, CA 94605  
1-888-EBPARKS (TRS 711)  
ebparks.org



## 공공치안 민원신고양식



20200224

East Bay   
Regional Park District

건강한 공원 건강한 시민

민원인은 경찰관의 어떠한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경찰서는 민원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절차

주 법률에 따라 경찰서는 제공된 서비스의 질과 직원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의견을 기꺼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은 경찰서와 일반 지역 사회 사이에 열린 소통 채널을 제공합니다.

경찰서는 부당 행위를 신고, 조사, 해결하고 칭찬할 만한 행동을 표창하기 위한 효과적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경찰서 직원에 대한 모든 민원을 일관된 방식으로 조사하고 판결합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 1) 아래 주소로 감독관에게 직접 신고

Public Safety Headquarters  
17930 Lake Chabot Road  
Castro Valley, CA 94546

### 2) 비긴급 번호로 전화

(510) 881-1833로 전화해서 감독관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 3) 본 양식 또는 서신을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

EBRPD Police  
Attn: Chief of Police  
17930 Lake Chabot Road  
Castro Valley, CA 94546

본 양식을 작성할 때는 제공된 빈 칸에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정보

이름 \_\_\_\_\_

주소 \_\_\_\_\_

시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 \_\_\_\_\_

## 관련 직원

이름 \_\_\_\_\_ 배지# \_\_\_\_\_

이름 \_\_\_\_\_ 배지# \_\_\_\_\_

이름 \_\_\_\_\_ 배지# \_\_\_\_\_

이름 \_\_\_\_\_ 배지# \_\_\_\_\_

이름 \_\_\_\_\_ 배지# \_\_\_\_\_

**필요할 경우 추가 정보를 첨부하십시오.**

## 사건 정보

날짜 및 시간 \_\_\_\_\_

장소 \_\_\_\_\_

간단한 설명 \_\_\_\_\_

민원 신고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형법 148.6에 따라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의 부당 행위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 진술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민원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임무 수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경찰서는 민원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이 절차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조사 후 해당 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원인은 경찰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및 민원과 관련된 신고 또는 조사 결과는 경찰서가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민원인 서명 \_\_\_\_\_

날짜 \_\_\_\_\_